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140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신현솔(기소), 박재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사내이사 C)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D 원피스 사진'(위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는 모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2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쇼핑몰 'F'의 'G'라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에 위 사진을 업로드하여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9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8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9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2015년경부터 피해회사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H'라는 명칭의 의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판매 페이지에 위 의류나 이를 착용한 모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서 'G'(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라는 명칭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그 판매 페이지에 피해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위 의류를 착용한 모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중 2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의류는 중국 소재 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로서, 피고인은 2019. 1. 1.경 '영업집조번호: I, 회사명칭: 심천시 용화신구 J 의류공장, 사이트 주소: (인터넷주소 2 생략)(이하 '중국 공장'이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F(인터넷주소 3 생략)에게 위 공장에서 구매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페이지 그림의 사용권한을 위임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권서(이하 '이 사건 수권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 무렵 위 수권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4) 그러나 이 사건 수권서에는 이 사건 사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수권서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 공장을 상대로 중국 공장이 이 사건 사진을 적법하게 이용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수권서에 기재된 사이트 주소인 '(인터넷주소 4 생략)'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위 '(인터넷주소 4 생략)'나 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인터넷주소 5 생략)' 에서 다수의 판매자가 이 사건 의류와 같은 형태의 원피스를 판매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9

있고, 그 판매 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이나 이용권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막연히 중국 공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수권서만을 믿고 이 사건 사진을 복제하여 사용한 과실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중국 공장을 통해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이 사건 사진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수권서에 '페이지 그림'의 사용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인터넷주소 4 생략)'나 '(인터넷주소 5 생략)' 등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이 사건 의류와 같은 형태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 _____